광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나699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 판 경 과

광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나69911 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10. 27 선고 2019가단6271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이삼(123)

담당변호사 심재훈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3. 1. 11.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10. 27. 선고 2019가단627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과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6. 22.자 증여계약을 28,348,05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8,348,0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C과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6. 22.자 증여계약을 77,621,05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7,621,0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9. 29. 망 E와 보증금액 59,500,000원, 보증기간 2016. 9. 29.부터 2018. 9. 2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망 E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2016. 9. 29. F조합과 70,0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1) 2) 망 E가 2017. 1. 29.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C, G, 피고(이하 망 E의 상속인들을 피고 등이라 한다가 각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변동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계 2017. 6. 28. 접수 제8661호로 2017. 1.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법원 등기계 2017. 6. 28. 접수 제8662호로 2017. 6. 2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C의 딸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3. 접수 제13305호로 2018.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및 관련사건의 결과

1)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 등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4. 19. F조합에 59,890,1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9. 5. 7.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가단201027호로 피고 등이 망 E의 사망으로 상속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 각 20,117,665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이에 피고와 G는 2019. 7. 2.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에 망 E를 피상속인으로 한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1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위 법원 2019느단58호)을 하였다.

4) 관련사건 제1심은 2021. 4. 1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피고와 G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피고와 G가 특별상속한정승인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알지 못해 위 특별상속한정승인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 G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0,117,665원 및 그 중 각 19,963,393원에 대하여, C은 20,117,665원 및 그 중 19,963,393원에 대하여 각 2019.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가 원고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사망함에 따라 피고 등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보증인 지위를 각 상속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가 2019. 4.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조합에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상속채무자 C에 대하여는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권 20,117,665원 및 그 중 19,963,393원에 대하여 2019.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

3)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에게 증여한 날인 2017. 6. 22. 이후에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위 증여일 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망 E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이상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 또한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C이 자신의 딸인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C에게 채무초과상태가 야기되거나 심화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2) C이 D에게 사실상 그의 유일한 재산3) 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D과 그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125,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증여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선의의 전득자라고 항변한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수익자와의 사이의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라 함은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72424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 C과 수익자인 D, 전득자인 피고와의 관계, C과 D 사이의 이 사건 증여의 경위와 동기, 피고가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증여의 사해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선의의 전득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인 D은 채무자인 C의 딸이고, 전득자인 피고는 C과 남매관계이다.

②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난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C이 단독 상속받은 부동산들과 상속채무들인데[상속재산들이 망 E 명의이기는 하나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인 축사를

실제 운영하였고, 그로 인해 채무들도 발생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C에게 단독 상속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2020. 4. 27.자 답변서 제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들 전부를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고, 이로써 상속채권자들인 원고를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초래되는 사정이 발생하게 되었다.

③ 그런데 ㉠ 피고 스스로도 “C이 축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며 자신은 신용상의 문제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자신의 딸(D)에게 이전등기를 할 것인데, D은 나이가 어려 부동산을 소유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채무명의를 빌려 담보대출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의 2020. 1. 29.자 답변서 제2쪽), ㉡ 피고는 C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증여 직후인 2017. 7. 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C에게 지급하고 C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기도 한 점, ㉢ 피고가 이 사건 증여 이후 1년 5개월이 지난 2018. 1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뒤에서(⑤항)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의 경위 특히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D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제1심에서 C의 무자력에 대해 다투다가 제5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증여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전득행위 당시(2018. 11. 16.)에도 C의 재정상태를 알고 C 명의 대출을 받지 못하자 D 등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④ 또한 피고는, 피고 등이 C의 채무초과상태임을 알았거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알았다면 C에게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협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C이 상속재산의 실질적 권리자로서 그에 관한 채권채무를 정리할 것으로 보아 협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C이 이 사건 증여 없이 상속받은 재산을 정리하였다면 상속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즉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후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의 사정은 이 사건 증여의 사해성에 대한 피고의 인식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공동상속인으로서 C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협의한 사정 및 피고가 뒤늦게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의 사해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는, C이 2017년 7월 피고로부터 대출금 125,000,000원 및 피고 명의 계좌를 받아 사용하다가, 2018년경 더 이상 축사를 운영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하자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매수하되 위 대출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D에게 송금함으로써 실제로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증여(2017. 6. 22.)당시에는 187,387,400원이고,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2. 10. 4.에는 201,347,1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의 L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무렵인 2017. 7. 3.경 이 사건 각 부동산 평가금액이 207,802,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실제로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이러한 진술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나. 위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201,347,100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8,348,052원4) 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전득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28,348,0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1. 9. 30.기준 합계 77,621,000원{= 원금 60,352,995원(= 20,117,665원 × 3) + 지연손해금 17,268,060원(= 5,756,000원 × 3)}의 구상채권을 가진 것을 전제로 그 한도 내에서 취소를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위 구상채권 중 C의 상속지분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영하, 판사 황진희, 판사 김용신

별지

1)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피고는 관련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아니하였다).

2) 피고는 제1심 제5차 변론기일 이전까지 C에 대한 무자력에 대해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위 변론기일에서 대리인을 통해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C은 피고 등과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망 E 명의의 부동산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4개 부동산(전남 장흥군 H, I, 위 지상 주택, 전남 장흥군 J)을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위 부동산 전부를

D에게 같은 날 증여하였는바, C은 위 부동산을 전부 처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

4) = 20,117,665원 + 8,230,387원[=19,963,393원 × (3+ 159/365) × 연 12%(=19,963,393원에 대하여 2019. 5. 7.부터 2022. 10. 12.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원 미만 버림]